


의정활동보고서



제257회 임시회(2012. 8. 27 ~ 9. 10)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 중에도 상임위별 민생현장 방문과
의원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여름 유난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행복
하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204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히 종합5위를 차지하며 대한
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후반기에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단합되고

성숙된 의회를 만들어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와 감시하는
민위의 대변기관으로 우뚝 자리 매김합시다.

모자람이 많은 본의원이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의원님 여러
분의 아낌없는 성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원님 한분 한분의 고견을
받들어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특위구성 및 업무보고 청취 등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宋 必 珪

차 례

I. 개	황	7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18
IV. 민원처리		20
V. 본회의 보고사항		22
VI. 5분 자유발언		45
☐ 이용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울릉)		45
☐ 정상진 의원(농수산위원회 / 예천)		48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안동)		52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울진)		55
☐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김천)		59

부 록

☐ 조례안(11건).....	65
☐ 결의안(4건).....	140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는 2012년 8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9월 10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11회의 상임위원회, 2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8월 27일(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이용진 의원의 “근해 채낚기어선 러시아 어장 출어문제에 관하여”와 정상진 의원의 “2012 곤충엑스포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김명호 의원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촉구”, 황이주 의원의 “집행부, 의회와의 동반자적 태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9월 10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수향 의원의 “성폭력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안전심사에 있어서는 11건의 조례안과 9건의 결의안 및 6건의 기타안 등 총 26건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중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원안 가결이 있었고,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결의안 중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수정 결의하였으며,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기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2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창욱 의원(구미), 부위원장에 김하수 의원(청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성규 의원(경산), 부위원장에는 박권현 의원(청도)이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물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유보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의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행정안전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전문간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안 복지문제에 대한 논의와 당부를 하였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관광공사 등을 방문하여 경북관광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경북의 관광 브랜드를 향상시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과 능금
쥬스공장을 둘러보며, 경기침체 및 이상기후현상으로 농어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
활동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하였고, 건설소방
위원회에서는 소방항공대, 도청이전예정지 등을 둘러보며 최근
늘어나는 재난관련사고 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의 역할을 다해 줄 것과 도청이전사업추진에 미비한
점이 많이라며 이를 적극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2년 8월 27일(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2년 8월 27일 ~ 9월 10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49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3	1	2	2	2	1	2	1	1	1
누 계	286	23	38	39	32	27	36	30	34	27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7(월) 14:00 (제1차)	☐ 개 회 식 ☐ 5분 자유발언 ○ 이용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울릉) ○ 정상진 의원(농수산위원회, 예천) ○ 김명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안동)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울진) ☐ 안전처리 ○ 제2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9. 10(월)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 김천) ☐ 안전처리 ○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10(월) 11:00 (제2차)	○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해양수산물부 설치 촉구 결의안 ○ 발농업직불제 대상품목 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촉구 결의안 ○ 영천경마공원 조속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 ○ 경상북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10(월) 11:00 (제2차)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6(목) 11:00 (제1차)	□ 안전심사 ○ 업무보고(의회사무처) ○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경상북도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8(화) 10:30 (제1차)	☐ 안전심사 ○ 업무보고(일자리경제본부) ○ 조례안 심의 -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업무보고(기획조정실)	
8. 29(수) 11:00 (제2차)	☐ 업무보고 ○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8. 30(목)	☐ 현지확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	
8. 31(금)	☐ 현지확인 ○ 대구경북연구원, 경북TP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9(수) 11:00 (제1차)	☐ 안전심사 ○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 조례안 심의 -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업무보고 ○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9. 3(월) 11:00 (제2차)	☐ 안전심사 ○ 감사관실 업무보고 ○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 보건복지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업무보고 ○ 조례안 심의(보건복지국 소관)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 심의(여성정책관 소관)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9. 4(화) 14:00	☐ 현지확인 ○ 노인전문간호센터(14:00~)	
9. 5(수)	☐ 현지확인 ○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10:30~)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8(화) 11:00 (제1차)	☐ 업무보고 ○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9(수) 11:00 (제2차)	☐ 업무보고 ○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촉구 결의안	
8. 30(목) 10:00	☐ 현지확인 ○ 경상북도관광공사 ○ (재)경주세계문화엑스포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28(화) 10:30 (제1차)	☐ 업무보고 ○ 농수산국 ☐ 결의안 ○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 발농업직접지불제 대상품목 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촉구 결의안 ○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한 30년간 50% 감면 추진 결의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8(화) 10:30 (제1차)	☐ 조례안 심사 ○ 어항시설관련 조례 폐지 조례안 - 어항시설사용료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 업무보고 ○ 농업기술원	
8. 29(수) 11:00	☐ 현지확인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 능금쥬스공장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30(목)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 ○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업무보고 ○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9. 3(월) ~9. 4(화)	☐ 주요업무보고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 현지확인 ○ 소방항공대(대구 동구 검사동) ○ 도청이전예정지 ※ 업무보고 ○ 구담보(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 소방학교(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8. 28(화) 10:30 (제1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 주요업무보고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9. 3(월) ~ 9. 5(수)	☐ 현지방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외	

〈특별위원회〉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9.10(월)	운영위 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윤리 특별위원회	9.10(월)	농수산위 회의실	☐ 윤리 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Ⅲ. 의안처리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구 분		접수 (부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27 (311)	26 (305)	21 (236)	2 (63)	1 (4)	2 (2)	(3)	1 (3)	
조 례 안	소 계	13 (178)	12 (172)	8 (120)	1 (46)	1 (4)	2 (2)	(3)	1 (3)	
	의 회 제 안	8 (67)	7 (63)	6 (47)	1 (16)			(2)	1 (2)	
	도지사 제 출	4 (78)	4 (76)	2 (52)	(21)	(1)	2 (2)	(1)	(1)	
	교육감 제 출	1 (33)	1 (33)	(21)	(9)	1 (3)				
규 칙 안		(2)	(2)	(2)						
예산 · 결산		(17)	(17)	(6)	(11)					
동의 · 승인		(24)	(24)	(21)	(3)					
건 의 안		(3)	(3)	(3)						
결 의 안		9 (32)	9 (32)	8 (29)	1 (3)					
기 타 안		5 (55)	5 (55)	5 (55)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3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8. 16,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 업	기 타
계	3 (66)	(8)	(12)	(10)	1 (21)	1 (2)	(4)	(3)	1 (2)	(4)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행 정 보건복지										
문 화 환 경										
농수산	1								1	
건 설 소 방	1				1					
교 육	1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3 (66)	3 (66)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농 수 산	1	1				
건설소방	1	1				
교 육	1	1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4건(조례안 12, 결의안 2)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김희수 의원 (2012. 8. 16)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 (2012. 8. 20)
윤창욱·김봉교 의원 (2012. 8. 16)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구자근 의원 (2012. 8. 17)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2. 8. 20)
김하수 의원 등 4명 (2012. 8. 17)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김영식 의원 (2012. 8. 17)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2. 8. 17)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
이영식 의원 (2012. 8. 16)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 (2012. 8. 20)
전찬걸 의원 (2012. 8. 21)	경상북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 (2012. 8. 22)
박진현 의원 (2012. 8. 14)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농수산 (2012. 8. 20)
경상북도지사 (2012. 8. 17)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
"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건설소방 (2012. 8. 20)
홍진규 의원 등 11명 (2012. 8. 17)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2012. 8. 10)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교육 (2012. 8. 20)

2. 조례공포 사항 : 9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2. 6. 2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	2012. 7. 12 (제3354호)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355호)
"	"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	" (제3356호)
"	"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3357호)
"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58호)
"	"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3359호)
"	"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3360호)
"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3361호)
"	"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 (제3362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운 영 위 원 회	7. 13 ~ 7. 14	경주시	• 하반기 의회운영방향논의를 위한 간담회 ※ 참석 : 운영위원
건설소방 위 원 회	7. 17 ~ 7. 18	포항시	• 여름철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추진 방안 모색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 ※ 참석 : 건설소방위원
기획경제 위 원 회	7. 19 ~ 7. 20	영덕군 울진군	• 하반기 위원회 운영방안 간담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참석 : 기획경제위원
행정보건복지 위 원 회	7. 19 ~ 7. 20	포항시	• 의원연찬회 및 현지방문 ※ 참석 : 행정보건복지위원
교 육 위 원 회	8. 3 ~ 8. 4	안동시 예천군	• 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참석 : 교육위원
문화환경 위 원 회	8. 9 ~ 8. 10	김천시	•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참석 : 문화환경위원
농 수 산 위 원 회	8. 17 ~ 8. 18	예천군	• 경북 농업발전방향 및 워크숍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참석 : 농수산위원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여성농업인 리더십교육 참석
 - 일 시 : 2012. 7. 6(금) 11:00
 - 장 소 : 경북청소년수련센터
 - 참 석 : 배수향 의원
-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2012 경북여성대회 참석
 - 일 시 : 2012. 7. 6(금) 11:00
 - 장 소 : 예천 문화체육센터
 - 참 석 : 송필각 의장, 채옥주 위원장, 이경임 의원
- 2012 경영혁신평가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7. 9(월)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의원
- 경상북도관광공사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2. 7. 9(월) 11:00
 - 장 소 : 경상북도관광공사(육부촌)
 - 참 석 : 박병훈·전찬걸·채옥주 위원장, 김말분·배수향·서정숙·이상효 의원
- 『해피투게더나눔프로젝트』 연합 발대식 및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7. 9(월) 18:0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2012 경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캠페인 참석
 - 일 시 : 2012. 7. 10(화) 15:50
 - 장 소 : 김천예술고(정산 아트홀)
 - 참 석 : 배수향 의원
- 일본 (주)다이셀社 자동차부품공장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2. 7. 10(화) 16:00
 - 장 소 : 영천경제자유구역內 입지부지 현장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장경식 의원
- 9.1 교장 공모제 심사 참석 및 격려
 - 일 시 : 2012. 7. 11(수) 9:30
 - 장 소 : 칠곡교육청
 - 참 석 : 추재천 의원
-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현판식 참석
 - 일 시 : 2012. 7. 11(수) 10:00
 - 장 소 : 도청 회계계약심사과 출입문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제3회 공감드림캠프 참석
 - 일 시 : 2012. 7. 12(목) 10:00
 - 장 소 : 경북환경연수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14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2. 7. 12(목) 11:00
 - 장 소 : 경륜훈련원(영주)
 - 참 석 : 김종천 의원
-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2. 7. 12(목) 11:00
 - 장 소 : 공군회관 3층 그랜드 볼룸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 제12회 경북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7. 12(목) 15:00
 - 장 소 : 구미대학교 강당
 - 참 석 : 심정규·이태식 의원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2. 7. 13(금) 10:00
 - 장 소 : 대구대학교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장보기행사 참석
 - 일 시 : 2012. 7. 13(금) 11:00
 - 장 소 : 군위 전통시장
 - 참 석 : 홍진규 의원

- 경상북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
 - 일 시 : 2012. 7. 13(금) 17:0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2012 낙동강시민탐사대회 참석
 - 일 시 : 2012. 7. 14(토) 7:30
 - 장 소 : 안동 강변시민공원
 - 참 석 : 김명호 · 이영식 의원
- 의장단 포항시 언론사 방문
 - 일 시 : 2012. 7. 16(월) 10:20
 - 장 소 : 포항시 전 언론사(KBS, MBC 외)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김희수 의원
- 『다함께 잘 사는 희망경북』 현장 소통투어 참석
 - 일 시 : 2012. 7. 16(월) 14:00
 - 장 소 : 경산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김영식 · 김창숙 · 서정숙 의원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 부위원장 연석회의 참석
 - 일 시 : 2012. 7. 17(화) 8:30
 - 장 소 : 의장 회의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 박병훈 · 박진현 · 정상진 · 장두옥 · 채옥주 위원장, 김희수 · 구자근 · 도기옥 · 홍진규 의원

- 2012 경상북도 여성일자리 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2. 7. 18(수) 10:00
 - 장 소 : 구미 박정희 체육관
 - 참 석 : 구자근 · 김봉교 · 박태환 · 심정규 · 윤창욱 ·
이태식 의원
- 경북도향교재단 석전모의 대제 참석
 - 일 시 : 2012. 7. 18(수) 14:30
 - 장 소 : 안동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45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종별 탁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2. 7. 18(수) 11:00
 - 장 소 : 영천시체육관
 - 참 석 : 김수용 위원장
- 2012 경상북도 「대한민국인제상」 지역심사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7. 19(목) 10: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중간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7. 19(목) 10:30
 - 장 소 : 의회 회의실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 기술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2. 7. 19(목) 16:00
 - 장 소 : 대구가톨릭대 최요한관
 - 참 석 : 서정숙 의원
-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설계자료 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2. 7. 20(금) 10:00
 - 장 소 : 구룡포읍사무소
 - 참 석 : 김원석 의원
- 경북여성농민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2. 7. 20(금) 14:00
 - 장 소 : 안동체육관
 - 참 석 : 김명호·이영식 의원
- 경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2. 7. 20(금) 18:0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 달 의원
- 경북사립유치원교원 연수회
 - 일 시 : 2012. 7. 21(토) 10:30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영호남 태권도 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2. 7. 21(토) 11:00
 - 장 소 : 동국대학교 체육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도의회·대구시의회 신임 의장단 간담회
 - 일 시 : 2012. 7. 23(월) 9: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 영천 금호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7. 23(월) 10:30
 - 장 소 : 금호농협 APC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7. 23(월) 11:00
 - 장 소 : 구미상공회의소
 - 참 석 : 송필각 의장, 심정규 의원
- 의회사무처 “농촌일손돕기 현장” 격려 참석
 - 일 시 : 2012. 7. 24(화) 11:00
 - 장 소 : 대야농장(김천시 부항면 소재)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나기보·배수향 의원

-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 지원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2. 7. 24(화) 15:00
 - 장 소 : 문경 문화아트홀
 - 참 석 : 송필각 의장, 고우현 · 이경임 · 이시하 의원
- 제12기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강의
 - 일 시 : 2012. 7. 24(화) 16:00
 - 장 소 : 경상북도 소방학교
 - 참 석 : 김영기 의원
- 한국초등학교 교장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2. 7. 26(수) ~ 7. 27(목)
 - 장 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및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제1회 세계의성마늘축제 참석
 - 일 시 : 2012. 7. 27(금) 11:00
 - 장 소 : 의성 마늘테마파크
 - 참 석 : 나현아 · 이왕식 의원
- 석적고등학교 교명선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7. 27(금) 11:0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청
 - 참 석 : 추재천 의원

- 헬로우 맘모스 2012 경주특별전 참석
 - 일 시 : 2012. 7. 27(금) 11:00
 - 장 소 : 경주아리원특별전시관
 - 참 석 : 최우섭 의원
- 제2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7. 28(토) 10:00
 - 장 소 : 포항 청하면 기청산식물원
 - 참 석 : 장두옥 · 채옥주 위원장
- 2012 비치사커 전국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2. 7. 28(토) 11:00
 - 장 소 : 고래불해수욕장 특설무대
 - 참 석 : 김기홍 의원
- 제4회 봉화은어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7. 28(토) 13:40
 - 장 소 : 봉화 내성천변 체육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 권영만 · 홍광중 의원
-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7. 28(토) 19:00
 - 장 소 : 예천 한천특설무대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 정상진 위원장,
도기욱 · 이경임 의원

- 제9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7. 28(토) 20:40
 - 장 소 : 형산강 체육공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장두욱·채옥주 위원장, 김희수·이정호·한창화 의원
- 영덕원자력발전소 관련 현안 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2. 7. 30(월) 12:00
 - 장 소 : 영덕군청 회의실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경상북도 새마을리더 봉사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2. 7. 31(화) 10:50
 - 장 소 : 경운대학교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구자근·김봉교·박태환·변우정·심정규·이태식 의원
-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세계문화유산 등재 2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7. 31(화) 15:30
 - 장 소 : 경주 양동마을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제9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참석
 - 일 시 : 2012. 7. 31(화) 21:00
 - 장 소 : 포항 북부해수욕장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김말분·장경식 의원

- **백두대간 우드아트페어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2. 8. 1(수) 11:00
 - 장 소 :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2012 일본 방위백서 발표 관련 규탄성명서 발표회 참석**
 - 일 시 : 2012. 8. 1(수) 11:30
 - 장 소 : 도의회 도민의 방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김희수·배수향·서정숙 의원
- **제23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8. 3(금) 10:00
 - 장 소 : 영천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제197차 안전점검의 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참석**
 - 일 시 : 2012. 8. 3(금) 10:00
 - 장 소 : 대진해수욕장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바르게살기운동 경북여성대회 참석**
 - 일 시 : 2012. 8. 3(금) 15:00
 - 장 소 : 경북도립대학 문화체육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명호·도기욱·이경임 의원

- 제7회 후포 전국비치사커대회 참석
 - 일 시 : 2012. 8. 4(토) 10:00
 - 장 소 : 울진 후포해수욕장
 - 참 석 : 황이주 의원
-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연맹 가족한마당(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8. 6(월) 11:30
 - 장 소 : 상주 친환경농업학교
 - 참 석 : 강영석 · 한재석 의원
- 독도 플래시몹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8. 6(월) ~ 8. 7(화)
 - 장 소 : 독도
 - 참 석 : 김세호 의원
- 2012년 경상북도생활개선회 활력화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8. 8(수) 10:30
 - 장 소 : 봉화체육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정상진 위원장, 강영석 · 김명호 · 권영만 · 나기보 · 도기욱 · 이경임 · 정영길 · 최학철 · 한창화 의원
- 2012 포항바다 국제공연예술제 참석
 - 일 시 : 2012. 8. 8(수) 18:30
 - 장 소 : 포항 북부해수욕장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김말분 · 장경식 의원

- 칠곡군 물놀이 안전 훈련 참석
 - 일 시 : 2012. 8. 9(목) 10:00
 - 장 소 : 칠곡보
 - 참 석 : 추재천 의원
- 경북새농민 한마당 다짐대회
 - 일 시 : 2012. 8. 9(목) 11:00
 - 장 소 : 봉화군민회관
 - 참 석 : 권영만 의원
- 제13회 한국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 일 시 : 2012. 8. 9(목) ~ 8. 10(금)
 - 장 소 :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 일대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강영석·김명호·나기보·정영길 의원
- 인성교육 체험 원로교육자 연수 참석
 - 일 시 : 2012. 8. 9(목) ~ 8. 10(금)
 - 장 소 : 경상북도화랑교육원
 - 참 석 : 홍광중 의원
- 2012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2. 8. 9(목) 18:00
 - 장 소 : 경주시민운동장
 - 참 석 : 이 달, 최우섭 의원

- **경북학교통학차량안전도우미 연수**
 - 일 시 : 2012. 8. 10(금) 9:30
 - 장 소 : 경북교육연수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결단식 참석**
 - 일 시 : 2012. 8. 10(금) 11:00
 - 장 소 : 구미 금오산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구자근·김봉교·박태환·심정규·
윤창욱·이태식·장영석 의원
- **제2회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인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8. 14(화) 10:20
 - 장 소 : 예천 진호국제양궁장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정상진 위원장, 도기욱 의원
- **학교장 화랑체험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8. 14(화) 10:30
 - 장 소 : 화랑교육원
 - 참 석 : 최우섭 의원
- **포항야구장 준공 및 프로야구 개막경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8. 14(화) 17:30
 - 장 소 : 포항야구장
 - 참 석 : 장두욱·채옥주 위원장, 김희수·장경식 의원

-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 일 시 : 2012. 8. 15(수) 10: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도기욱·홍진규 의원
- 제9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8. 16(목) 19:0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세호·김창숙·서정숙·윤성규·황상조 의원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8. 17(금) 10: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명호 의원
-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8. 17(금) 14:00
 - 장 소 : 의회 제2별관 회의실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김희원 의원
- 경상북도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2. 8. 17(금) 14:00
 - 장 소 : 도의회 세미나실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최종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8. 17(금) 15:00
 - 장 소 : 영덕군청 회의실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재)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2. 8. 17(금) 15: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채옥주 위원장
-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2. 8. 17(금) 19:00
 - 장 소 : 포항 칠포 해변
 - 참 석 : 송필각 의장, 장두옥 위원장, 김말분·장경식·
장세현 의원
- 제8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8. 18(토) 11:00
 - 장 소 : 청도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권현·장세현 의원
- 독도수호 표지석 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8. 19(일) 11:00
 - 장 소 : 독도 망양대
 - 참 석 : 송필각 의장, 이용진 의원

-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 재단」 설립 창립(발기인) 총회 참석
 - 일 시 : 2012. 8. 20(월)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2012 울진군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석
 - 일 시 : 2012. 8. 21(화) 11:00
 - 장 소 : 울진 엑스포공원
 - 참 석 : 황이주 의원
- 경상북도·구미시-LG디스플레이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2. 8. 21(화)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장영석 의원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및 을지연습 참관
 - 일 시 : 2012. 8. 21(화) 13: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김수용·박병훈·박진현·장두욱·전찬걸·정상진·채옥주 위원장, 김희수 의원
- 경북장애인복지회 지도자 수련회 참석
 - 일 시 : 2012. 8. 21(화) 17:00
 - 장 소 : 청송군 국화마을
 - 참 석 : 김영기 의원

- 한국경영학회 통합 학술대회 참석
 - 일 시 : 2012. 8. 21(화) 18:3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2012 을지연습 중앙단위 실제훈련 참석
 - 일 시 : 2012. 8. 22(수) 14:00
 - 장 소 : 임고면 삼매리(영천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 일 시 : 2012. 8. 23(목) 11:00
 - 장 소 : 세종시 베어드림파크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의원연구단체 사회복지연구회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2. 8. 23(목) ~ 8. 24(금)
 - 장 소 : 포항시 일원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및 사회복지연구 위원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금융상품 출시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8. 24(금) 10: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기진·서정숙 의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임사회 참석
 - 일 시 : 2012. 8. 24(금) 10:3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무역회관
 - 참 석 : 김희수 의원
- 한우암소고기 소비촉진 시식행사 참석
 - 일 시 : 2012. 8. 24(금) 12:00
 - 장 소 : 청미관(구내식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정상진 위원장,
나기보·박기진 의원
- 2012 제3회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8. 24(금) 14:00
 - 장 소 : 도청재난상황실
 - 참 석 : 윤창욱 의원
- 경상북도 여성정책 미래포럼 참석
 - 일 시 : 2012. 8. 24(금) 14:00
 - 장 소 : EXCO 인터볼고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채옥주 위원장,
김말분·김창숙·배수향·서정숙·이경임 의원
- 경주 세계피리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8. 24(금) 20:00
 - 장 소 : 경주 봉황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2년 8월 27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용진 의원(울릉) ◎

<<근해 채낚기어선 러시아 어장 출어문제에 관하여>>

울릉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근해 채낚기 어선 러시아 어장 출어 문제입니다.

오징어는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어업의 황금어종이며, 주력 어업소득으로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역어업인들의 가계와 생존을 함께 한 대표적인 어종인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6월경에 초등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하여 다음해 1월경까지 조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9월경부터 10월~11월까지만 강원도, 울릉도 및 동해 남부 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동절기 해상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면 절대 조업일수가 부족하여 매년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동해안 오징어 어획동향을 보면 1억 3331만톤으로 전년도 보다는 159% 증가했으나, 평년 대비 85%선에 불과합니다. 특히 울릉도의 경우 2011년 9월말까지는 오징어 어획

실적이 거의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연근해 채낚기 어선 냉동선들이 러시아 수역까지 진출하면서 어군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울릉도 근해에서 어획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어 울릉도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처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서 우리나라 동해 남부 및 독도, 울릉도, 대마도 일원에서 산란하여 오호츠크 해역으로 북상하였다가 대화퇴를 거쳐 울릉도 연근해 부근으로 남하하는 회유성 어종으로 우리나라 동해(북한수역 포함)의 오징어 자원은 발생계군의 회유경로상 러시아 연해주 수역과 동일계 군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로를 점령하여 어군의 진로를 방해하고 어군의 남하시기를 지연시킴에 따라 울릉도 연근해 해역에서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출어지연 또는 포기로 지역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며, 올 들어서는 한·러 민간협약을 통해 80여 척의 채낚기 어선이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출어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수역에 진출하는 채낚기 어선 대다수의 광력시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규정된 광력을 무시하고 임의로 광력을 증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트롤선과 공조 조업을 자행하는 등 불법행위로 어족자원 고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력들인 만큼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부산 대형트롤 어선들이 공조 조업을 목적으로 대화퇴 수역 및 러시아 수역까지 진출하여 남하하는 어군을 썩쓸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 및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이들 어선들에게 단속 및 지도보다 출어지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역에 조업하는 1,000여 척의 중국 쌍끌이 어선들의 진출 원인은 바로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채낚기 어선들인 것입니다. 정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영세어민도 아니고 기업형태의 채낚기 어선들을 계속 러시아 수역에 출어를 승인한다면 울릉도 어업인은 물론이고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해안 채낚기 영세어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러시아 수역 진출을 검토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징어 어획 부진 및 중국저인망 어선대책, 그리고 조업시기, 조업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으며, 단기적 과제로는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부진할 경우 동절기부터 내년도 성어기까지 영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오징어 자원보호와 영세어업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대형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상진 의원(예천) ◎

<<2012 곤충엑스포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정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7월 28일부터 85만 1,741명이라는 관람객이 다녀간 대장정의 축제가 지난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필각 도의회 의장님과 수시로 오셔서 격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예천 군민을 대신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천 엑스포 행사는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국제곤충학회 제2회 국제심포지엄이 행사기간에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5,000여 명의 회원을 소유하고 있는 학회가 150여 명의 외국 회원들이 다녀가면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거기에 인도의 샤르마 회장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축제로 인정 받는 인증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수세계엑스포 개최와 중복되고 뜨거운 피약별과 장마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예상목표를 훨씬 넘는 85만이 넘는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1,0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거두었고, 2억 5,000만 원의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며 곤충으로 인해서 6,000만 원의 판매 효과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600여 예천공무원과 예천군 민·관 유관기관의 자원봉사자들 그들의 노력이 일구어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공적인 행사를 경험으로 곤충산업이 소득 산업으로 산업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분야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경상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천에 있는 경도대학에 '산업곤충학과'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곤충관련 전문학과는 국내 어디에도 없으며, 특히 산림테라피단지가 곤충연구소와 같은 위치에 조성됨으로써 산림과 더불어 전문 인력을 우리 경도대학에서 양성하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규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산업현장을 이끌어 간다면 성공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성공한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가 도청이전과 더불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곤충산업은 희망이 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부자 되는 농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경도대학에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산업곤충학과' 개설을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지사님께, 또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락을 드립니다.

이어서 또한 우리 지역의 큰 이슈로 떠오르는 도청이전에 따른 주민들에 대하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익히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도청 이전을 위하여 순조롭게 많은 진척을 가져온 신도시 조성사업 중에 아직도 이주계획이 없는 주민들은 보상금액이 소액으로서 갈 곳이 없고 대대로 농사만 지어온 사람들로써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 주민 423세대 중 5,000만 원 이하 보상을 받은 세대가 44세대이고, 1억 원 미만이 89세대, 이로써 1억원이 안 되는 보상을 받은 주민이 133세대에 달합니다. 이주민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꼭 들어주십시오.

헌법 제23조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동 지원조례 제19조에도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보상금 1억 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전세 자금을 5,0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나 주민들은 전세만 얻어 이주할 경우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안이나 신도시 밖이나 가까운 곳에 이주단지를 마련하여

생활터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편입지역 중 풍천면 도양리와 호명면 산합리 운골 지역
에는 혐오시설 장례예식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지역의 주민
들에게 특별한 처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도와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보상을 하겠다고 무조건 이주
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도의 새천년의 도읍지를 건설하면서 3백만 도민의 축제의
도청이전지라면 몇 가구 되지 않는 피해주민들에게도 웃음을 주는
신도시 건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원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김명호 의원(안동) ◎

<<지방 분권형 개헌을 위한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후반기 첫 회기를 맞이하여 선진사회의 보편적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
소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권한 없는 자치, 2할 자치'
라는 자조 섞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나
주민참여 부분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 가치인
실질적 자치 확대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권한과 사무,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스스로 자율적으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과 기타」로 양분되는 비정상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우선주의 정책은 반균형
발전 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은 십 수 년 동안 우리 사회를 관류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장기간 되풀이되는 동안 마치 빗바랜 논리인양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분권을 외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정책에 대해 전략적·체계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을 포함하는 지방분권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의회에서도 일정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수년 전에 이미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온 바 있고, 부산광역시의회는 현재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방분권 실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는 유감스럽게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지방분권에 미온적인 것은 중앙당 중심의 정당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중심의 국가운영 방식은 중앙당 중심의 정당운영방식과 작동원리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인사들에게 지방이 안중에 없는 것처럼, 중앙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지방은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중앙당중심의 정당운영방식을 지역당위주로 개혁하여, 지방출신 중앙정치권 인사들이 지방분권운동의 선봉에 서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본 의원은 지난해 제25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실패 이후 지역사회에 팽배한 비판적 정서를 용광로에 담아서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으로 강력하게 표출시키되,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닌 정교한 이론체계에 입각한 구체적 의제로 분출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110일 정도 남긴 현재, 실행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역의 뜻있는 NGO 지도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시민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에 반해, 정작 지방정부와 의회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엄존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대선정국에 과잉정치화 되어 지방분권 과제는 실종돼버린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방정부와 의회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분권이 지방이 사는 유일한 길인지”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피폐해진 지방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처방이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공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대원칙이라도 확립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제 경상북도와 의회가 공히 지방분권운동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를 시스템 안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이주 의원(울진) ◎

<<집행부, 의회와의 동반자적 태도 촉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과연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도정발전의 동반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의 주관적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제 눈에 비친 집행부의 모습입니다.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선 업무의 비협조입니다.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이나 지역 민원에 대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변경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의원과 협의는커녕 귀뜸조차 해 주지 않는 게 우리 집행부의 행정행태였습니다.

자료 요구에 불성실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도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들고 나온 이 자료, 단상위에 올릴 수가 없어서

바닥에 놓았습니다만 이 자료, 제가 지난 5월 우리 교육청 모
부서에 요구했던 한 개, 단일 건인데 이렇게 자료가 방대합니다.

요약정리만 해서 저에게 제출을 했다면 이 방대한 자료에 수십
분의 일로 그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학교는
있는 자료,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복사해서 지역교육청에 제출
했고, 지역교육청은 그 자료에 정리정돈 없이 그대로 받아서
본청에 제출, 도본청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이
내용도 없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방대한 자료가 제가 요구했던
해당학교에 절반밖에 제출하지 않은 아직도 미제출 학교가 절반
이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큰 방대한 자료가 아직도 더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의회의 의원요구에
이렇게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이 행정행위, 이 행정행태를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망을 넘어 불신을 낳게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
니다. 이 자료를 들춰보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해당
학교 아닌, 해당교육청이 아닌, 교사 개인의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데이터베이스화 하라', '자료를
구축해 놓아라'하는 의미이고, 둘째는 이 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긴장을 좀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생팀에게도 기회를 주자, 우리는 한번 어떤 사업을 지정한 학교가 있으면 웬만해서는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런 만큼 저는 3~5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꼴찌를 하는 학교는 탈락을 시키고 같은 종목의 신생학교가 있다면 기회를 주자, 그것이 공평한 민주사회의 기회균등이 아닌가? 그래야만 경쟁력 강화를 이루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사정은 이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학교, 그리고 해당부서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자료만큼이라도 제가 지난 7~8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분석한 데이터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그리고 의장단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수상임위제' 도입입니다. 우리 의회는 '단수상임위제' 한 의원이 한 상임위만 활동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 활동도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수상임위'는 지나치게 업무가 분업화 되어 있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외에 다른 상임위의 업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처럼 무기력 합니다. 만약에 제가 행복위 위원이 아니고 교육위원이었다면 이런 자료를 내어 놓았겠습니까?

따라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집행부 견제 강화 등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복수 상임위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에 대한 동반자 의식 고취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선시대, 지방자치제 시대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축에 힘이 쏠리게 되면 그 수레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쪽이 균형감각을 유지할 때만이 수레는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그런 인식이 고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 도정발전에는 우리 의회가 동반자라는 이 인식이 민선시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년 9월 10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배수향 의원(김천) ◎

<<성폭력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제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사건, 김길태사건, 김수철사건, 수원의 오원춘 사건, 제주 올레길 사건 등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흉악한 성범죄들을!

그런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통영의 한 어린 초등학생이 성폭행으로 무참히 살해되었고, 며칠 전 나주에서는 집에서 잠자던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불에 싸인 채 납치되어 성폭행당하고 거리에 버려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불과 300m 떨어진, 조금만 걸어가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태풍 부는 영산교 다리 아래 방치된 죄 없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한없는 슬픔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와 가족이 너무나도 큰 상처이지만 부디 잘 치유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만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흉악한 범죄들을 접하면서 학교도, 사회도, 집도, 공공장소도 더 이상 안전지대란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새삼 가슴이 저려 옵니다.

흉악한 성폭력의 죄없는 피해자들은 이 땅의 아버지의 딸들이었습니다.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살인과 시신 유기에까지 이르는 흉악한 성범죄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없다하여 경북도 절대 성범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경북의 경우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2011년 성폭력발생건수는 830건으로, 2008년 688건에 비하여 21% 증가하였으며, 하루 평균 2.2건 이상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교육현장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14건의 아동성폭력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에 들어서만도 무려 3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에 접수된 성폭력관련 상담을 보면 2009년 442건, 2010년 601건, 2011년 88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원스톱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유형이 2009년에는 115건 정도였으나 2010년 327건, 2011년 35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길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전담반을 설치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합니다. 행정에서, 교육에서, 의회에서, 각 시민단체에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심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한 예로, 경남의 마을단위 아동·여성인권 지킴이단 운영, 아동 등하교길 도우미 운영사례와 같이 마을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성폭력 예방지킴이 활동을 하도록 해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차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 록



- 조례안 : 11건(원안가결 10, 수정가결 1)
- 결의안 : 4건(원안가결 3, 수정가결 1)

■ 조 례 안

-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도민의 교통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으로 도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 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위치)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98번지에 둔다.

제 3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
임직원, 운전자, 정비원,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
2. “교통약자”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민”이라 함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사업장 종사자 등을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 4 조(적용범위) 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체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4. 도민 및 공무원의 교통안전교육과 선진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5. 운송사업 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원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

제 6 조(연수원의 운영비 등) ①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설임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도지사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교육계획 보고) 연수원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예산 및 결산) ①연수원은 매년 관리 및 교육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지도감독) ①연수원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내용

가.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운영 보조금 예산 추계

나. 비용추계

- 연수원은 매년 여객 및 화물운수종사자 15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운송 서비스 증진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기준, 연수원 일반회계 세입은 도비 보조금(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구성되고 자체수입은 연수비 부담금 26백만원과 시설임대수입 53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75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운영비 지출은 인건비 528백만원, 일반운영비 136백만원, 연금부담금 38백만원, 업무추진비 등 기타 141백만원 등 총834백만원임.
- 연수원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 아니라 연수기관의 특성상 세입재원이 부족하고 운전종사자의 교육과 지역교통 문화 정착 기여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감안하여 일정한 도비보조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연수원 자체의 경영수익의 창출 등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등의 자구

노력도 요구되므로 기존지원예산 수준인 755백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됨.

- 연도별 연수원 운영비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운영비	8,013	662	706	750	680	710	728	737	775	755	755	755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
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별표 2”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나.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4. “뿌리산업 특화단지”란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 3 조(도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4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 5 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
3.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7.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뿌리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3. 그 밖의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 8 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등) ①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뿌리산업의 필요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 9 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뿌리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경상북도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조건 우대
4.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숙련 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및 뿌리산업 장기 근속자를 선정하여 국내·외 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서 우대
5. 뿌리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창업 지원
6.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

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별표 1]

뿌리산업의 범위(법 제2조제1호 관련)

1. 주조산업

중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1101	주철관(주조한 것)
				24113102	주철제 관련결구류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1101	회주물
				24311102	가단주물
				24311103	구상흑연주물 (덕타일주물)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12101	보통강주물
				24312102	특수강주물 (합금강주물)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4321100	알루미늄주물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2100	동주물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100	기타 비철금속주물
2923	금속주조 및 기타야금용 기계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중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101	프레스용 금형
				29294102	플라스틱용 금형
				29294109	기타 금형
				29294901	몰드베이스
				29294909	기타 주형관련 부속품

3. 열처리산업

중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101	공업용 노
				29150103	전기로
				29150900	노 부속품 및 부품

4. 표면처리산업

중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2	도금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29100	기타 금속처리 제품
2622	인쇄회로 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 판 제조업	26221101	페놀동박적층판
				26221102	에폭시동박적층판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4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5. 소성가공산업

중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100	분말야금제품
		25912	금속단조 제품 제조업	25912101	보통강 단조물
				25912102	특수강 단조물
				25912109	기타 철강 단조물
				25912201	스테인리스 단조물
				25912202	알루미늄 단조물
				25912203	동 단조물
				25912209	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25913	금속압형 제품 제조업	25913101	자동차용 프레스 가공품
				25913105	기타 프레스 가공품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3101	액압프레스
				29223102	기계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일반기
				29223803	나사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29223900	금속성형기계의 부품

6. 용접접합산업

중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101	천연 접착제
				20493102	합성수지 접착제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1102	접착테이프
2413	철강환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800	기타 1차 비철금속제품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9201	용접봉

중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2	기타 용접기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중 분 류		세 분 류		세 세 분 류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분류번호	산업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비고

1. 분류와 분류번호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한다.

[별표 2]

뿌리기술의 범위(법 제2조제2호 관련)

기술 부문	전 문 분 야
1. 주조 부문	가. 사형주조 나. 금형주조 다. 다이캐스팅 라. 정밀주조 마. 연속주조 바. 저압주조 사. 소실모형 주조 아. 특수주조
2. 금형 부문	가. 사출성형금형 나. 다색다중성형금형 다. 블로우성형금형 라. 복합성형금형 마. 프레스성형금형 바.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사. 파인블랭킹금형 아. 특수성형금형
3. 소성가공 부문	가. 단조 나. 압연 다. 압출 라. 판재성형 마. 특수성형

기술 부문	전 문 분 야
4. 열처리 부문	가. 전경화열처리 나. 국부열처리 다. 침탄열처리 라. 질화열처리 마. 복합열처리 바.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5. 표면처리 부문	가. 전기도금 나. 무전해 도금 다. 양극산화 라. 화성처리 마. 도장 바. 표면경화 사. 스퍼터링 아. 화학 기상증착
6. 용접접합 부문	가. 아크용접 나. 저항용접 다. 특수용접 라. 브레이징 마. 칩레벨 접합 바. 보드레벨 접합 사. 구조용 접합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뿌리산업 종합시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사업비 필요
 - 뿌리산업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경비
(연구개발, 시설환경 개선,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에 따른 사업비용 산정은 지경부의 유사 사업을
참고
 - 뿌리산업 실태조사 : 격년 기준
 - 뿌리산업 인력양성 : 매년 100명
 - 뿌리기업 시설환경 개선 : 약 100개 기업(5년간)
*시군비 매칭

〈뿌리산업 관련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 업 비	주요내 용	비 고
고령 주물단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40억원 (국 100, 지 20, 민 20)	그린팩토리 전환 및 기술지원 등	'12 ~'16
대경권 IT융합 SMART 금형기술 고도화 (광역연계협력사업)	210억원 (국 105, 지 52.5, 민 52.5)	금형기술 개발, 금형산업 구조전환 등	'11 ~'14

사 업 명	사 업 비	주요내용	비고
대경권열용융뿌리산업의 SW 융합 제조공정혁신 (광역연계협력사업)	95억원 (국 45, 지 30, 민 20)	제조공정 혁신 등	'12 ~'15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						
	○						
	소계(a)						
세출	○ 지방비	17.5	17	17.5	17	17.5	86.5
	소계(b)	17.5	17	17.5	17	17.5	86.5
□ 총 비용 (a-b)		17.5	17	17.5	17	17.5	86.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 비							
도 비	일반회계	10	9.5	10	9.5	10	49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7.5	7.5	7.5	7.5	7.5	37.5
민간							
기타							
합계		17.5	17	17.5	17	17.5	86.5

5. 부대의견

- 뿌리기술 개발 지원, 뿌리산업 첨단화, 인력양성 등 뿌리산업 육성사업이 정부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어 향후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비용추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신성장산업과 지방행정주사 정현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 뿌리산업 육성시책 추진	17	17	17	17	17	85
○ 산업DB 구축	0.5	0.5	0.5	0.5	0.5	2.5
○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5	5	5	5	25
○ 시설환경 개선	10	10	10	10	10	50
○ 인력양성	1	1	1	1	1	5
○ 기타사업	0.5	0.5	0.5	0.5	0.5	2.5
☐ 실태조사	0.5		0.5		0.5	1.5
○ 실태조사 실시	0.5		0.5		0.5	1.5
합 계	17.5	17	17.5	17	17.5	86.5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가족 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제 5 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3.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4.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 등의 부양서비스
5.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6.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7. 인지(認知)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8. 그 밖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 7 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①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 사례관리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육성)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2년 9월 3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경북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출산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를 포함하고, 한부모가족 등의 범위에 주소지를 규정하고, 중복 요인이 있는 주거비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5호의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으로 함.
- 안 제4조의 한부모가족 등을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함.
- 안 제6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9호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함.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5호의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2 제1항과 제3항으로 함.
- 안 제4조의 한부모가족 등을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등으로 함.
- 안 제6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9호를 제3호 부터 제8호까지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한부모가족 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생략)	제2조(정의)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한부모가족 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정안과 같음>	- 출산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1항 포함)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보 호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한부모가족</u> 등으로 한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보 호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경상북도내 주소</u> 를 둔 <u>한부모가족</u> 등으로 한다.	- 도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지원사업) (생략) 1. (생략) 2. (생략) 3. <u>주거비 및 환경개선 지원</u>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제6조(지원사업)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삭제>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거 급여와 주거환 경개선사업(사 회 복지 과) 과 행복한 보금자 리 만들기 사업 (새마을봉사과) 과의 중복 지원 요인 이 있 어 삭제함.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한부모 가족 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6,050세대에 16,291명에서 2011년 9,107세대 23,422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미혼모 가족 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한부모 가족 세대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계	6,050	16,291	6,435	16,969	6,998	18,463	8,007	21,128	7,259	18,504	9,107	23,422
모자가족	4,639	12,504	5,000	13,193	5,407	14,176	5,921	15,694	5,259	13,405	6,646	17,305
부자가족	1,411	3,787	1,435	3,776	1,591	4,287	1,902	5,042	1,825	4,702	2,269	5,667
미혼모가족					41	84	43	89	47	92	97	218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미혼부가족					5	21	4	8	6	14	24	60
조손가족 (조부·조모)					153	368	137	295	122	291	71	172

최근 3년간 경북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복지 관련 사업은 21개 사업에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음.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 증가의 특이성은 없으나 기능보강사업 규모에 따라 전체 예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표 2 참조>. 2012년 기준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50억 7천3백만원 중 국비 11억 1천 9백만원(22.1%), 도비 12억 2천4백만원(24.1%), 시군비 27억 2천8백만원(53.8%)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따라서, 조례 제정으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도 차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례를 제정으로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수렴·반영하고, 도의 예산부담 정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조례제정에 따른 신규 재정부담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2〉 최근 3년간 한부모 가족복지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합 계	8,235,000	5,109,050	5,073,347	
한부모가족자립학교 운영	38,000	40,000	40,000	도 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240,000	240,000	240,000	도 비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1,392,000	1,542,750	1,421,600	도 비
한부모가족 자녀대학 입학금	820,000	612,000	800,000	도 비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374,000	436,300	479,800	도 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000	40,000	40,320	도 비
모자보호시설 입소세대 하계수련비	24,000	26,000	26,040	도 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	21,000	23,000	22,500	도 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155,000	211,000	211,400	도 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워크숍			15,000	도 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2012년 분리)	2,276,000	1,215,000	321,689	국도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110,000	국도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99,000	국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428,000	497,000	90,000	국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생계비 지원			7,200	국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50,000	50,200	국도비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활동촉진수당		35,000	7,200	국도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61,000	61,000	35,118	국도비
청소년한부모가족 검정고시학습비	178,000	18,000	3,080	국도비
청소년한부모가족 자산형성계좌 지원	139,000	13,000	4,200	국도비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49,000	49,000	49,000	국도비

〈표 3〉 2012년 한부모 가족복지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2년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합 계	5,073,347	1,119,778	1,224,571	2,728,998
한부모가족자립학교 운영	40,000		40,000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240,000		72,000	168,000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1,421,600		426,480	995,120
한부모가족 자녀대학 입학금	800,000		240,000	560,000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479,800		143,940	335,86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320		12,096	28,224
모자보호시설 입소세대 하계수련비	26,040		7,812	18,2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	22,500		6,750	15,7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211,400		63,420	147,98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워크숍	15,000		15,000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2012년 분리)	321,689		96,507	225,18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110,000	888,000	66,600	155,400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99,000	79,200	5,940	13,86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90,000	45,000	13,500	31,5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생계비 지원	7,200	3,600	1,080	2,5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50,200	25,100	7,530	17,570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활동촉진수당	7,200	5,760	432	1,008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5,118	28,094	2,107	4,917
청소년한부모가족 검정고시학습비	3,080	2,464	185	431
청소년한부모가족 자산형성계좌 지원	4,200	3,360	252	588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49,000	39,200	2,940	6,860

〈첨부자료 1〉

경상북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모자보호시설 현황

(기준 : 2011. 12. 31)

법 인 명	법인대표	법 인 설립일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규모(㎡)		정 원 (세대)	입소인원			
시 설 명	시설장 (종사자)	시설설치 (신 축)		대 지	건 평		세대	계	남	여
포항양육원 유지재단	김명숙	'57. 4. 18	포항시 남구 송도동 436-44 054)247-4261	2,428	2,293.01	30세대 (90명)	26	71	25	46
포항모자원	신인숙 (5명)	'89. 10. 16								
자선단 (서울)	김철주	'57. 4. 6	경주시 구정동 65-1 054)772-5440	1,224	1,933.96	25세대 (100명)	21	50	17	33
경주애가원	김성녀 (5명)	'67. 7. 4 ('03. 3. 31)								
안동복지원	김수연	'45. 1. 25	안동시 옥동 981-1 054)852-0929	2,862	1,479.25	24세대 (64명)	23	57	17	40
안동복지원	김윤애 (5명)	'55. 2. 28 ('04. 9. 22.)								
복지마을 진흥회	홍의표	'53. 7. 30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70-1 054)971-0897	1,212	1,509.00	20세대 (60명)	13	36	12	24
상록모자원	박명숙 (5명)	'77. 1. 12 ('02. 7. 6)								
영신재단	신세민	'55. 1. 22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188-3 054)788-2111	2,369.8	1,202.43	20세대 (60명)	14	34	7	27
영신해밀홈	정은경 (5명)	'84. 12. 20 ('09. 5. 8)								

● 미혼모자보호시설 현황

법인명	법인대표	법 인 설립일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규모		정원 (명)	입소인원			
시설명	시설장 (종사자)	시설설치		대지	건평		세대	계	남	여
동방사회 복 지 회 (서울)	김도중	'75.8.13	경산시 중방동 840-13 053)816-1016	317	265.74	10	9	10	1	9
경북샤론의 집	강다선 (6명)	'07.3.30								

※ 모자일시보호시설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전화번호	정 원	현 원	비 고
삶의 쉼터	이건재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 341-3	054-822-3294	9인 미만	-	예산 미지원

〈첨부자료 2〉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기준 : 2011. 12. 31)

시군명	대표자	운영주체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기간
포항시 (독립형)	박정숙	직영	포항시 북구 동빈1가 74-15 3층	054) 244-9701~3	-
김천시 (다기능)	장영기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	김천시 대광동 1347-1	054)431-7740	2010.3.1 ~ 2013.2.28
안동시 (독립형)	박응임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동시 안기동 제비원로 240-6	054)823-6008	2009.3.13 ~ 2012.3.12
구미시 (다기능)	장훈성	(사)아름다운 가정만들기	구미시 형곡동 314-3	054)443-0541	2010.1.1 ~ 2012.12.31
영주시 (다기능)	박미경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영주시 가흥동 314-3	054)636-5435	2010.3.1 ~ 2012.12.31
상주시 (다기능)	곽희주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상주교회)	상주시 무양동 1-161	054)535-1341	2012.1.1 ~ 2014.12.31
의성군 (다기능)	이정순	천주교안동교구 사회복지회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2	054)832-5404	2009.1.11 ~ 2011.12.31
청도군 (독립형 병합형)	정영숙	청도군건강가정 지원센터 (대구대학교)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57	054)373-8131 ~4	2010.6.22 ~ 2012.12.31
칠곡군 (독립형 병합형)	김정옥	칠곡군건강가정 지원센터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523-60 새마을회관 2층	054)975-0833	2010.10.1 ~ 2013.9.30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
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 4 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실태조사) ①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회복지 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 설치) ①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장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변안전 보호) ①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민·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은 3,445개소(경로당 7,254개소 제외)가 운영되고 있음.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일 평균 사회복지대상자 수는 180,675명으로 타나나고 있으며, 종사 인력은 23,561명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설수	일 평균 이용자수	종사자 수
합 계	3,445	180,675	23,561
장애인	203	63,624	1,861
노 인	578	23,141	6,021
아 동	280	7,267	821
영유아	2,245	73,302	13,976
정 신	21	1,534	252
부랑·노숙인	5	498	57
한부모	7	258	31
여 성	46	126	151
다문화	23	4,887	84
사회복지관	15	3,562	151
한센시설	2	326	46
지역자활센터	20	2,150	110

* 경로당(7,254개소) 제외

- 경북도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예산을 보면, 종사자 수당과 자격수당으로 2010년 20억 3천만원, 2011년 25억 1천8백만원, 2012년 27억 2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에 2010년 1억 6천7백만원, 2011년 1억 5천7백만원, 2012년 1억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붙임자료 1, 2 참조).

따라서 2012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인당 연평균 383,532원(90억 3천6백만원/23,56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전문교육 및 연찬회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인당 연평균 8,064원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추가적인 부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실태조사 5천만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 7천3백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8천만원, 사회복지사 등 경력관리 사업 4천만원, 신변 안전보장 장비 구입 및 시설 설치 2천5백만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시설 운영주체) 9천4백만원, 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 2천만원 등 총 4억 2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조례 제정이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추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소요액	산 출 근 거
합 계	402,56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실태조사	50,000	* 실태조사 50,000천원×1회=50,000천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종사자수당 등)	72,960	* 생활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인상 (월 8만원 → 10만원) - 대상 : 부랑인, 정신요양, 한부모, 여성복지 생활시설 - 산출기준 : 304명×20천원×12월 = 72,960천원 ※ 노인(10~15만원), 장애인(10만), 아동(10만원)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80,000	* 분야별 교육 및 훈련 80,000천원
경력관리 및 지도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관리)	40,000	* 사회복지사 등 경력 관리 시스템 구축 40,000천원
신변 안전보장 장비 구입 및 시설 설치	25,000	* 1개소당 5,000천원×5개소=25,000천원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이주여성쉼터 1개소, 성매매피해보호시설 1개소, 가정 폭력피해보호시설 1개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도, 시설운영주체 공동부담 방식)	94,604	* 배상책임보험가입 4,000원×23,561명
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 (고문변호사 지정 또는 소송 기금적립)	20,000	* 고문변호사 지정 또는 소송기금 적립 20,000천원(연간)
포상 및 표창		* 비예산
사회복지사 인권 및 권리 옹호	20,000	* 인권 교육 및 권리옹호 지원 20,000천원

〈붙임자료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자격증 수당(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6,768,080	2,030,024	4,738,056	8,344,320	2,518,616	5,825,704	9,036,400	2,726,140	6,310,260
지역자활 센터 종사자 수당	-			175,680	52,704	122,976	190,080	57,024	133,056
장애인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2,209,440	662,832	1,546,608	2,454,240	736,272	1,717,968	2,513,880	754,164	1,759,71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720,000	216,000	504,000	528,000	158,400	369,600	500,160	150,048	350,112
	* 사회복지관, 부랑인,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248,000	974,000	2,274,000	4,056,000	1,217,000	2,839,000	4,683,000	1,405,000	3,278,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4,320	37,296	87,024	169,440	50,832	118,608	163,680	49,104	114,576
	* 사회복지관, 한센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수당	0			116,640	50,112	66,528	116,640	50,112	66,52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320	12,096	28,224	40,320	12,096	28,224	42,160	12,648	29,5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			300,000	90,000	210,000	322,800	96,840	225,96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장려수당)	307,200	92,160	215,040	355,200	106,560	248,640	345,600	103,680	241,920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자격수당)	118,800	35,640	83,160	148,800	44,640	104,160	158,400	47,520	110,880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붙임자료 2〉

사회복지시설 전문교육 및 연찬회 등(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167,000	167,000	0	157,000	157,000	0	190,000	190,000	0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체육대회	-			-			10,000	10,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8,000	8,000		8,000	8,000		15,000	15,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교육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연수회	7,000	7,000		7,000	7,000		-		
사회복지시설 CEO연찬회	10,000	10,000		-			-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워크숍)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워크숍	-			-			15,000	15,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연수	25,000	25,000		25,000	25,000		30,000	30,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직무교육	7,000	7,000		7,000	7,000		10,000	10,000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경상북도연합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를 말한다.

제 3 조(활동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합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
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 6. 조사연구·학술진흥·홍보출판
-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 4 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연합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 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지원절차 등) ①연합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연합회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보고·검사 등) ①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 연합회 현황을 보면, 회원수 34만 2천명에 시·군지회 23개소, 분회 315개소, 경로당 7,413개소, 노인대학 34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 개발공사 소유의 건물(260.9㎡, 대구시 남구 대명동 15-126번지)을 무상으로 사무공간과 강당으로 이용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취업지원센터(인력 23명) 및 자원봉사센터(인력 12명) 운영은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 경북연합회 운영, 노인대학 등 운영, 경로당 노인 공동 작업장 개발, 전국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축제 참가,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음. 2010년 715,110천원(국비 501,110, 도비 214,000), 2011년 921,110천원(국비 671,110, 도비 250,000), 2012년 931,110천원(국비 671,110, 도비 260,000)이 지원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0년			2011년			2012년		
	소 계	국 비	도 비	소 계	국 비	도 비	소 계	국 비	도 비
계	715,110	501,110	214,000	921,110	671,110	250,000	931,110	671,110	260,000
취업지원센터 운영		501,110	-		501,110	-		501,110	-
자원봉사센터 운영		0	-		170,000	-		170,000	-
경북연합회 운영비			45,000			50,000			50,000
사업비 (노인대학운영 등 3개 사업)			30,000			30,000			30,000
경로당노인공동 작업장개발			-			25,000			25,000
전국노인생활 체육대회참가			36,000			40,000			50,000
경로당순회프로 그램운영			30,000			30,000			30,000
노인자원봉사 축제참가			5,000			5,000			5,000
노인의 날 행사			18,000			20,000			20,000
노인복지기금 (게이트볼대회, 노인신문, 전통문화전수, 지역사회봉사활동)			50,000			50,000			50,000

- 따라서, 조례의 제정으로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고령사회의 심화(15.7%)와 초고령사회 도래(노인인구 20% 이상, 2018년 예측)에 대비한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의 사업 확대 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도 조례로 설립되고 도가 출연한 기관

라. 도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마. 도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 5 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도 지방공사·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도와 도 지방공사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도 지방공사·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5. 도지사·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도의 성과평가결과
7. 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검사 결과 (대기·소음 등)
8. 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인구 및 대통계, 산업통계, 복지시설, 쓰레기 발생량 등)
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 용역사업 용역결과
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도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 내역
6.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7. 도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 6 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공개

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 7 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정보공개심의회)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행정지원국장, 감사관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공개방법 등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심의회의 의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정보공개책임관) 도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담당하는 실·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현지도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

례에 의하여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행정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경상북도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

경상북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어항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군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
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 3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 4 조(위원의 임기) ①위촉된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6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

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 7 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 8 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전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 제18조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는 주요내용을 경상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한다.

제 5 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6.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1.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및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2.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건축기본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조정·자문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가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본다.

제 8 조(정책위원회의 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 9 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①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건축계획·도시계획·건축조경·교통·생태환경·건축경관·건축문화·건축디자인분야 등 건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그 밖의 시범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시범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자문·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9월 10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	제 3 조(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그 소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u>공보관실</u> , 미래전략기획단, 기획 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 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 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가. <u>대변인실</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 결 의 안

-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 발농업직불제 대상품목 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촉구 결의안
- 영천경마공원 조속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의안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8. .
발 의 자 : 전 찬 결 의원
(찬성자 11명)

1. 주 문

- 일본이 독도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 함으로써 대마도 진실을 사전 은폐하고,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임.
- 향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대해서는 '대마도 실지회복'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분쇄하고, 우리 영토인 대마도를 찾는 첩경임.

2. 제안이유

- 일본은 황국신민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틈만 나면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독도 영유권 침탈의 궁극적인 이유는 한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 함으로써 대마도 진실을 은폐하고, 방패막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주장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 줌으로써 일본의 교활한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분쇄하고, 나아가 '대마도 실지회복'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

3. 결의안 제출처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대한민국
행정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을 위한 촉구 결의안**

- 독도는 분명 우리의 영토이며, 옛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황국신민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틈만 나면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파문은 독도 문제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 자국의 후손들에게까지 독도가 일본 땅임을 선언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2005년 자위대 방위백서를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후 지금까지 8년 연속 소아병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대해 감정적이고 일회적이며, 불같이 분노하다가 거품처럼 사라지는 일편단율적 행태로만 일관해왔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 내 여론까지 조종하여 '일본의 공격에 맞대응하면 일본을 자극해서 그들의 전략에 말려든다'는 식의 표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결국,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수세적 태도로만 일관하도록 만들었다.
- 일본이 그토록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함으로써 대마도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책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땅 대마도를 찾는 것이 독도를 수호하는 길임과 동시에 영토를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제시하는 자료들 보다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문헌 및 과학적 증거들이 훨씬 더 풍부하다.

-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는(49.5km) 일본 본토에서 보다(147.5km) 3배나 더 가깝다.
- 지리적·역사·문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삼국지의 위지왜인전(魏志倭人傳), 일본의 등정방(藤定房)이 기술한 대마도 역사서인 대주편년략(對州偏年略), 13세기말 일본의 대표 서적인 진대(塵袋), 기타 중국의 고지도(古地圖) 등은 대마도가 완벽한 우리의 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 과학적으로도 대마도 주민의 혈통 조사 결과, 한국 혈통과 염색체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정치사적으로 볼 때 1862년 서구열강들이 대마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을 때 최초의 국제공인지도인 '삼국 접양지도'를 서구 열강들에게 제시하면서 대마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던 당사자가 바로 일본이었다면, 일본 스스로 이미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공인한 것이다.
- 역사적으로 국경은 언제든지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큰 변곡점에서 한·일간 국경문제가 대두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마도에 대한 연구와 주장은 줄기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제헌 국회의 대
마도 반환 요구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 경상북도의 정체성은 선비, 화랑, 새마을과 호국정신이다. 조
상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오랜 영토인 대마도를 찾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첩경이기에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당당
하게 요구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의 교활한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대마도의 역사·문화유적 및 유물·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할 것과 타 자치단체와 함께 '대
마도 실지 회복'에 진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경상북도는 일본의 소아병적 영토 주권
침해 도발행위가 계속되면 될수록, 독도 수호사업과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
1. 중앙정부도 일본의 침략 야욕에 대해 영토수호 차원에서 단호
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여 독도수호 사업과 대마도 실지회복에
장애가 되는 관련법과 정책을 조속히 개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떳떳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에 설치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영토수호 및 회복 지역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토분쟁 지역의 현안을 폭넓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1. 경상북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에 대해 독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마도 문제와 병행해서 대응하고, 이를 위해 대마도에 관한 역사, 문화유적 및 유물, 지리 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영토 수호 및 회복 지역 자치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은 우리의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토수호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독도와 병행하여 대마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해양수산부 설치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2년 8월 일
발 의 자 : 박진현 의원
(찬성자 36인)

1. 주 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바다는 전 인류의 미래로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국가 미래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다양한 해양수산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영토의 3면이 바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생존과 성장이 바로 제2의 국토인 바다에 달려 있음을 대변하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해양수산정책으로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분야를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설치를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하고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함.
- 국회와 정당 등은 해양수산부 설치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함.
-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 설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본격적인 『해양경북시대』를 열어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4. 참고사항

- 결의안 : 별첨
- 결의문 통보처 :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경상북도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바다는 전 인류의 미래이다. 이에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국가 미래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다양한 해양수산정책을 경쟁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영토의 3면이 바다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생존과 성장이 바로 제2의 국토인 바다에 달려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6년 세계 5대 해양강국을 이루기 위해 출범하였던 해양수산부가 2008년 2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폐지되고 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해양수산관련 분야가 정책적으로 홀대받고 국정외 후순위로 밀려 났던 것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확보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구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상생의 해법을 해양에서 찾고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이미 해양생태계의 변화, 육상자원의 고갈 등으로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열강들의 해양영토 싸움이 시작되었고 앞 다투어 바다로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변국들도 독도, 이어도 등 해양영토분쟁, 수산자원 쟁탈 등 치열한 해양주도권 확보전략을 노골화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인 해양수산정책으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분야 전담부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변화, 수산자원 감소, 조선해운산업의 위기 등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미래발전과 균형적인 성장을 꾀하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미래 해양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장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모하도록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천혜의 해양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양국가로서 삶의 터전인 바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플랜트, 해양레저관광, 해양경제영토, 해양기후 등의 해양수산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하고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1. 국회는 “해양수산부 설치”가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설치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 앞장서라!
1. 각 정당은 대한민국 미래생존과 성장을 위한 “해양수산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1. 경상북도는 동해바다를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설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본격적인 해양경북시대를 열어가는데 만전을 기하라!

2012. 8.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2. 8월 28일
제안자 : 농수산위원장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2012. 3.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협상 추진 등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개방은 농업비중이 높은 우리 경상북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밭농업과 과수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한·미FTA 발효로 우리나라 전체 농업피해액의 34.6%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경북의 농업은 향후 15년차 농업생산 감소액이 4천 415억원에 이르며, 이중 밭농업과 과수는 1,703억원으로 우리 도 주력품목들이 직격탄을 맞아 농업 기반 붕괴로 인한 농업인의 삶이 더욱 파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상북도 도의회와 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미

FTA협상 등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밭농업과 과수의 피해보전을 위해 밭농업직불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그 결과 2011년 10월 31일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에 밭농업 직불제가 포함되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지원 단가와 품목제한 등으로 농업인소득보전의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명목상 직불제로 전락해 버린 실정임.
-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통해 FTA로 피해를진 농촌을 살리고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의 품목확대와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본래 직불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 국회 및 대 정부 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함.

3. 주요내용

- 밭농업직불제 19개 품목 제한을 철폐하여 과수를 포함한 밭농업 전체 품목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직불금 지급단가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인 ha당 70만원 선으로 인상할 것과
- 공부상지목 밭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상농지를 지목과 관계

- 없이 밭농업에 이용하는 모든 농지로 확대하는 한편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가산성(加算性)을 인정하여 밭농업 직불제와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3호
 -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장
- 밭농업직불제 시행 건의
 - 건의일자 : 2011년 12월 7일, 2011년 12월 20일

5.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각 정당(정책위의장)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철폐 및 지급단가 인상 촉구 결의안

2006년 한·미FTA 협상개시후 5년 8개월만인 2012년 3.15일 한·미FTA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농민들을 비롯한 농업계는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오던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 왔음을 느끼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의 밭농업을 대표하는 과채류와 과수품목은 향후 한·미FTA 발효 15년차 농업생산 감소액이 1천 703억원으로 추정될 만큼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 도의회와 경상북도는 FTA에 따른 농업소득감소에 대한 농업인 소득보전과 황폐해져가는 농업의 새로운 활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지난해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정부에서는 2011. 10. 31일 여·야·정 합의에 따른 한미 FTA보완 대책으로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인 시행으로 농촌경제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 대상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밭면적 738천ha 중 143천ha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며, 이중 실제 신청면적은 83천ha로 전체 밭면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상북도의 밭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밭면적의 18%인 136천ha를 차지하고 있지만 직불제 신청면적은 고작 15천ha로 밭농업직불제라는 명칭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농업인단체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벽을 쌓고 있는 동시에, 궁여지책으로 “식량주권 사수와 농지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경북도에서 전면적인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의 절박한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통해 FTA로 피해를 입은 농촌을 살리고 식량안보와 농지의 이용 증대 및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19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을 밭농업전체로 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밭농업의 다원적가치를 반영하여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쌀소득 고정직불금 지급단가인 ha당 700천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현재 공부상 밭으로 제한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 대상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는 모든 농지로 지급대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가산성(加算性)을 인정하여 밭농업 직불제와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2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 일동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 의 안

의 안 번 호	
------------	--

제안년월일 : 2012년 8월 28일
제 안 자 : 농수산위원장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 2010년 7월 “제8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정부로부터 제4경마장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임.
- 「레저세 감면조건」 미이행시 재정적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유권해석으로,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저세 감면조건 이행담보 차원에서 대안 제시를 요구함.
- 이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통해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하여 30년간 50% 감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코자 함.

3. 주요내용

- 영천경마공원의 조속한 허가와 원활한 사업추진 촉구
- 영천경마공원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 영천경마공원에 대한 레저세액을 30년간 50% 감면 추진할 것을 결의

4.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5. 이송처

-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장

영천경마공원 조속 추진 촉구 및 도세감면 추진 결 의 안

영천경마공원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본장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말산업 발전과 국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자, 한국마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하여 제4경마장으로 경상북도 영천시에 신규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루빨리 허가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영천경마공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선정한 사업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신뢰 구축을 위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영천경마공원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지매입 예산을 승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한다.

셋째, 영천경마공원 레저세액에 대하여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10회에 걸쳐 30년간 50%를 감면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9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정활동보고서



제258회 임시회(2012. 10. 4 ~ 10. 1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과 연이은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오늘부터
보름간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단위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수해복구작업과 민생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 1년간의 도정을 거울삼아 도의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宋 必 珪

차 례

I. 개 황	169
II. 의사일정	172
III. 의안처리	178
IV. 민원처리	180
V. 본회의 보고사항	182
VI. 5분 자유발언	202
□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구미)	202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 성주)	207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상주)	211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울진)	215

부 록

□ 조례안(6건)	221
□ 결의안(2건)	259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58회 임시회는 2012년 10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0월 18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7회의 상임위원회, 5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4일(목)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뒤이어 이어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이상용 의원은 “남북6축 조기건설, 일자리 효율화 방안, 문화바우처 사업, 기숙사 이용실태”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문화환경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항공산업 육성, 도와 도교육청간의 중복예산”과 관련하여 도정 질문을 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농수산위원회 나기보 의원이 “혁신도시 관련, 태풍 수해대책, 대안학교 활성화 방안,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공공도서관 확충,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이왕식 의원은 “도 집행부(정무부지사) 역할 관련, 도청이전 이주민 보상 관련, 도내 박물관 건립, 감염성 질환(결핵)과 보건교사 확충”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도심지 보건지소 확충” 등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폭넓은 질문을 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의 김봉교 의원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책관련”, 농수산위원회의 정영길 의원의 “수해지역 피해지원 관련”, 농수산위원회의 강영석 의원의 “땅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의 “원전주변지역 질병 역학조사”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안전심사에 있어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승인안, 2건의 동의안, 12건의 기타안 등 총 23건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중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원안 가결이 있었고, “경상북도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 승인안, 동의안, 기타안 등 17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5개 특별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이주 의원(울진), 부위원장 김봉교 의원(구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경식 의원(포항), 부위원장 이용진 의원(울릉),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용 의원(영양),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

(안동),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기 의원(청송), 부위원장 홍진규 의원(군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영만 의원(봉화), 부위원장 나기보 의원(김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 장세현 의원(포항), 부위원장 김창숙 의원(비례)이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상정유보되었다. 이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행정안전복지위원회는 김천에서 열린 제5회 경북식품박람회 참관을 하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청도와 구미를 방문하여 관광자원화사업의 추진현황 실태점검과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주 주민을 위로하였다.

또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태풍 “산바” 피해 및 복구현황, 대책 등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며, 교육위원회는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사 개청식과 제14회 경상북도 학생축제를 참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2년 10월 4일(목)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2년 10월 4일 ~ 10월 18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52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 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회	12	1	1	1	1	1	1	1		5
누계	298	24	39	40	33	28	37	31	34	32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4(목) 14:00 (제1차)	☐ 개회식 ☐ 안전처리 ○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이상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영양) ○ 서정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비례)	
10. 5(금) 11:00 (제2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나기보 의원(농수산위원회, 김천)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의성) ○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구미)	
10. 18(목) 11:00 (제3차)	☐ 5분 자유발언 ○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구미)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성주)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상주)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위원회, 울진)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8(목) 11:00 (제3차)	□ 안전처리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5(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 '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8(월) 10:30 (제1차)	☐ 안전심사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현지 확인 ○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현지 확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2(금) 10:00 (제1차)	☐ 안전심사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 '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현지방문 ○ 제5회 경북식품박람회 참관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8(월) 10:30 (제1차)	☐ 안전심사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 현안사항 보고 ○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추진상황 보고	
10. 17(수)	☐ 현지 확인 ○ 주요 당면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청도)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9(화) 11:00 (제1차)	☐ 한농연 도연합회 임원 간담회 ☐ 안전심사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학교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 ○ '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5(금)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 안전심사 ○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9(화)	☐ 현지 확인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사 개청식(11:00) ○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개원식(14:00)	
10. 10(수) 10:3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특별위원회〉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독도수호특별위원회	10. 18(목)	문화환경위원회실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서민경제특별위원회	10. 18(목)	기획경제위원회실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10. 18(목)	건설소방위원회실	☐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경북·대구발전상생특별위원회	10. 18(목)	농수산위원회실	☐ 경북·대구발전상생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10. 18(목)	교육위원회실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19 (330)	18 (323)	17 (253)	1 (64)	(4)	(2)	(3)	1 (4)	
조 례 안	소 계	7 (185)	6 (178)	5 (125)	1 (47)	(4)	(2)	(3)	1 (4)	
	의 회 제 안	5 (72)	5 (68)	4 (51)	1 (17)			(2)	(2)	
	도지사 제 출	1 (79)	(76)	(52)	(21)	(1)	(2)	(1)	1 (2)	
	교육감 제 출	1 (34)	1 (34)	1 (22)	(9)	(3)				
규 칙 안		(2)	(2)	(2)						
예산·결산		(17)	(17)	(6)	(11)					
동의·승인		3 (27)	3 (27)	3 (24)	(3)					
건의 의 안		(3)	(3)	(3)						
결 의 안		2 (34)	2 (34)	2 (31)	(3)					
기 타 안		7 (62)	7 (62)	7 (62)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8. 16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12. 8. 31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1		1		1
누 계	4		4	3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 업	기 타
계	9 (72)	2 (10)	1 (13)	2 (12)	3 (23)				1 (2)	
의 회 영										
기 경 회	1	1								
행 정 보 건 보 지	2	1								
문 화 환 경			1							
농 수 산	1								1	
건 설 소 방	5			2	3					
교 육										
특 별 위 원 회										

※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9 (72)	3 (66)				6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행 정 보건복지	2					2
문화환경						
농 수 산	1					1
건설소방	5	3				2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9건(조례안 7, 동의안 2)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김명호 의원 등 2명 (2012. 9. 21)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2. 9. 26)
한혜련 의원 (2012. 9. 24)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2. 9. 21)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
경상북도지사 (2012. 9. 2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박병훈 의원 (2012. 9. 20)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수산 (2012. 9. 26)
경상북도지사 (2012. 8. 31)	경상북도친환경 무상급식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	" (2012. 8. 31)
김희원 의원 등 13명 (2012. 9. 21)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2. 9. 26)
김영기 의원 등 4명 (2012. 9. 21)	경상북도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 (2012. 9. 26)
경상북도교육감 (2012. 9. 2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11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2. 9. 10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2012. 9. 27 (제3363호)
"	"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3364호)
"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3365호)
"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3366호)
"	"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367호)
"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제3368호)
"	"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 (제3369호)
"	"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 (제3370호)
"	"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	" (제3371호)
"	"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372호)
"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73호)

3.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제9회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1: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장경식·김원석 의원

○ 2012 YOYO 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3:30
- 장 소 : 예천군 문화회관
- 참 석 : 고우현·이상용·이경임 의원

○ 2012 도민의식 선진화 교육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5:30
- 장 소 : 성주가야산 호텔
- 참 석 : 박기진 의원

○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7:00
- 장 소 : 충남 아산 온양관광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8회 경상북도·허난성 국제미술교류전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8:00
- 장 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참 석 : 김명호 의원

○ 평화홀딩스 & NOK社 영천경제자유구역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2. 9. 12(수) 11:0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박진현·김수용 위원장

○ 청송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2(수) 11:00
- 장 소 : 청송 중평숲
- 참 석 : 김영기 의원

○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9. 12(수) 17:00
- 장 소 : 안동대학교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명호·이영식 의원

○ 제14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2. 9. 12(수) 17:00
- 장 소 : 경주황성공원 축구장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0:3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명호·김창숙·김하수·
도기욱 의원

○ 영주지역 교육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1:00
- 장 소 : 영주교육지원청
- 참 석 : 홍광중 의원

○ 제62주년 영천대첩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1:30
- 장 소 : 국립영천호국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지역언론사 간부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2:00
- 장 소 : 대구시 일원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2012년 건강백세 운동교실 발표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3:00
- 장 소 :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이태식 의원

○ 경상북도 여성아카데미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3:3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한국 로봇융합연구원 개원식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4:00
 - 장 소 :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 참 석 : 장경식·김희수 의원
- 2012 대구경북 섬유·패션업계 CEO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5:00
 - 장 소 : 경주 코오롱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한국자유총연맹 2012 전국 시·군·구 여성회장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5:4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2012 경북 한우경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0:00
 - 장 소 : 구미 선산가축시장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광광섭·나기보·변우정·
심정규·이태식 의원
- 물의날 기념 경북스카우트 야영대회 격려
 - 일 시 : 2012. 9. 14(금) 10:00
 - 장 소 : 상주보 일원
 - 참 석 : 홍광중 의원

- 2012년 경상북도 마이스터 대전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1:00
 - 장 소 : 구미코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진현 위원장, 구자근·김봉교·박태환·변우정·심정규·이태식 의원
- 제32회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1:00
 - 장 소 :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위령탑
 - 참 석 : 김기홍 의원
- 경북지역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4:00
 - 장 소 : 울진 백암한화콘도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수로부인 현화가 학술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4:00
 - 장 소 : 영덕군민회관
 - 참 석 : 김기홍 의원
- 도민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4:00
 - 장 소 : 포항시청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장경식·김원석 의원

○ “찾아가는 독도” 청소년 순회 교육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4:20
- 장 소 : 김천 성의여고
- 참 석 : 배수향 의원

○ 도의회사무처 직장협의회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8:00
- 장 소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나기보 · 배수향 의원

○ 제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참석

- 일 시 : 2012. 9. 15(토)
- 장 소 : 북천시민공원
- 참 석 : 강영석 · 한재석 의원

○ 2012년 경상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5(토) 11:00
- 장 소 : 안동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채옥주 위원장, 김말분 · 김명호 ·
이영식 의원

○ 자유산악회 전국회원 한마음 등반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5(토) 11:00
- 장 소 : 문경새재
- 참 석 : 이경임 의원

○ 의성 낙단보 水축제 참석

- 일 시 : 2012. 9. 15(토) 17:00
- 장 소 : 낙단보
- 참 석 : 나현아·이왕식 의원

○ 2012년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12. 9. 17(화) ~ 9. 28(금)
- 장 소 : 23개 시·군 사회복지시설(399개소)
- 참 석 : 쏠 도의원

○ 태풍피해 현장조사 및 복구지원

- 일 시 : 2012. 9. 17(화) ~ 9. 28(금)
- 장 소 : 시군 태풍지역
- 참 석 : 농수산 위원

○ “고운 최치원 선생” 일대기 특별 전시전 참석

- 일 시 : 2012. 9. 17(월) 16:00
- 장 소 : 경주박물관
- 참 석 : 최우섭 위원

○ 태풍 “산바” 피해복구지원 및 현장 방문 격려

- 일 시 : 2012. 9. 18(수) ~ 10. 3(수)
- 장 소 : 23개 시·군 피해지역
- 참 석 : 쏠 도의원

- 방폐공단, 추석맞이 지역사랑나눔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18(화) 14:00
 - 장 소 : 경주시 일원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북부지역발전포럼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2. 9. 18(화) 15:00
 - 장 소 : 영주상공회의소
 - 참 석 : 김종천 의원
- 경주시 생활 개선회 모임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0: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농어민회관
 - 참 석 : 이 달 의원
- 제10회 문경시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및 복지증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0:00
 - 장 소 : 문경 황제웨딩홀
 - 참 석 : 이시하 · 고우현 · 이경임 의원
-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2012 예천군 여성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0:00
 - 장 소 : 예천군 문화회관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도기욱 의원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태풍 “산바” 피해지역 영농지원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0:30
- 장 소 : 포항시 기계면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장세현·김말분·
김희수·한창화 의원

○ 제27회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1:00
- 장 소 : 안동실내체육관
- 참 석 : 김명호·이경임·이영식·홍광중 의원

○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개통식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5:00
- 장 소 : 영남대학교
- 참 석 : 송필각 의장, 황상조·김세호·김영식·김창숙·
서정숙·윤성규 의원

○ 청도군 이장 연합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1:00
- 장 소 : 청도 군민실내체육관
- 참 석 : 김하수·박권현 의원

○ 경상북도 여성아카데미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3:30
- 장 소 : 포항 포스코 국제관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장경식 의원

○ 4대강 문화관 디아크 개관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4:30
- 장 소 : 달성 강정보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안동대학교 공자학원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6:00
- 장 소 : 안동대학교 국제관
- 참 석 : 홍광중 의원

○ 제9회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6:2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최학철 의원

○ 국외 문화재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8:0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세계 생명공학대회 환송만찬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9:25
- 장 소 : 경주EXPO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영일만항 수중정화 및 치어방류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0:00
- 장 소 : 포항 영일만항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제93회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필승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1: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황상조 · 김영식 · 김창숙 의원

○ 포항 교육지원청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4:00
- 장 소 : 포항 북구 양덕동
- 참 석 : 장세현 · 김말분 · 김원석 · 김희수 의원

○ 영양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4:00
- 장 소 : 영양군 일월면
- 참 석 : 이상용 의원

○ 민주평통 15기 경북B권역 자문위원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4:00
- 장 소 : 구미금오산 호텔
- 참 석 : 박태환 의원

○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어울림 한마당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5:00
- 장 소 : 칠곡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 한류 드림페스티벌 패밀리 드림 콘서트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8:30
- 장 소 : 경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최학철 의원

○ 봉화 송이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9. 22(토)
- 장 소 : 봉화 체육공원
- 참 석 : 권영만·이경임 의원

○ 낙동미로 릴레이자전거축제 참석

- 일 시 : 2012. 9. 22(토) 10:00
- 장 소 : 안동 시민생활체육공원
- 참 석 : 김명호·이영식 의원

○ 포항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2(토) 11:00
- 장 소 :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 참 석 : 김희수·이정호·한창화 의원

- 2012 경북학생바둑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9. 23(일) 10:00
 - 장 소 : 구미전자공고
 - 참 석 : 심정규 의원
- 2012 한류 드림페스티벌 한류드림콘서트 참석
 - 일 시 : 2012. 9. 23(일) 17:30
 - 장 소 : 경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최학철 의원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이사회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0:3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의원
- 2012 국가대표 4차 선발전 겸 제1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1:00
 - 장 소 : 울진 후포요트경기장
 - 참 석 : 황이주 의원
- 경북도 다문화 어울림 마당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1:00
 - 장 소 : 육군 3사관학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도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1: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 제6회 건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4:00
- 장 소 : 의회 제2별관 회의실
- 참 석 : 윤성규·홍진규 의원

○ 민족통일 경상북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5:00
- 장 소 : 칠곡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16회 경상북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 장 소 : 울진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황이주 의원

○ 태풍 “산바” 영농지원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1:00
- 장 소 : 성주군 벽진면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기진·정영길 의원

○ 문경 우로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1:00
- 장 소 : 문경 호계면 우로실 마을회관
- 참 석 : 고우현 의원

○ 울릉 추석맞이 환경대청결운동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4:00
- 장 소 : 울릉읍 도1리 일원
- 참 석 : 이용진 위원

○ 지역발전 플랜트건설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4:00
- 장 소 :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 참 석 : 장경식 · 김희수 의원

○ 제1회 무지개 예술축제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4:00
- 장 소 : 대구미래대
- 참 석 : 최우섭 위원

○ 동김천 나들목 개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4:00
- 장 소 : 동김천 나들목
- 참 석 : 배수향 의원

- 젓소개량사업소 영양분산사업장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5:00
 - 장 소 :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영양분산사업장
 - 참 석 : 이상용 의원
- 2012년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공모전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5:00
 - 장 소 : 구미자연환경연수원
 - 참 석 : 구자근 의원
- 칠곡 약목 119지역대 청사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5:00
 - 장 소 : 칠곡 약목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 의원
- 제20회 구미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6(수)
 - 장 소 : 해평 청소년수련원
 - 참 석 : 윤창욱·변우정 의원
- 다문화가정 방문
 - 일 시 : 2012. 9. 26(수) 11:00
 - 장 소 :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6(수) 11:00
- 장 소 : 칠곡 왜관시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 · 추재천 의원

○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민생현장 방문

- 일 시 : 2012. 9. 26(수) 12:20
- 장 소 : 포항 죽도시장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장세헌 · 김말분 · 김희수 ·
이정호 · 한창화 의원

○ 칠곡군 초·중등 교직원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6(수) 13:00
- 장 소 : 왜관중학교, 칠곡동부초등학교
- 참 석 : 추재천 의원

○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9. 26(수) 14:00
- 장 소 : 의회 제2별관 회의실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김희원 의원

○ 제39회 세계 관광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7(목) 11:4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 최학철 의원

○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2. 9. 28(금) 14:00
- 장 소 : 도의회 세미나실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2012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9. 28(금) 19: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원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명호 · 이영식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2년 10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구미) ◎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책 관련>>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출신 김봉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하여 도차원의 세심하고 지속적인 피해 대책 마련과 더불어 향후 각종 유해 화학물을 비롯한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시스템의 체계적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구미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주민들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유독성 가스누출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18명이 부상하였으며, 피해지역 주민 건강 검진 수가 13일 현재 10,100명이나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농작물 피해도 252.7ha에 달하고 기침, 콧물, 호흡기 이상 등 가축피해가 3,528두,

차량 1,419대, 산림 67.7ha 등 도대체 이 피해가 어디까지일지가늡조차 어려운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고당시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의 조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안이한 판단과 대처로 인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국내 최초의 불산 누출사고이자 유동성 화학물질 누출로는 전례없는 규모로 이미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피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정부와 구미시 등 관계당국의 부실한 대처를 지켜보면서 불신감만 커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사고발생 12일만인 지난 8일 정부 차원에서 불산가스 누출의 직접적 피해지역인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만, 여전히 피해지역주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으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급급합니다. 대형사고 발생 시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체계적 사후조치를 거듭 촉구만 하다가 이내 잠잠해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만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지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에는 유독물질 제조업체가 구미 19개 업체를 비롯하여 총 48개 업체가 있고, 9개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62개의 지방산업단지, 월성, 울진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사고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였듯 화학물질, 특히 유독성 가스 누출 사고 등은 설마 하는 사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 방지 및 사후대책 매뉴얼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나 이제까지 이러한 위험지역 및 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하였고, 이번 불산 누출사고 직후에도 관계기관이나 부처 간에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사고발생 20여 일이 지난 지금도 구미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일대 190가구 340여 명의 주민들은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구미환경자원화 시설과 구미청소년수련원에 머물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단 기업체와 근로자 및 인근지역 주민들 역시 엄청난 재산손실과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건강 관리대책 및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에서 밝힌바와 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각 분야별 지원계획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고, 피해주민과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하여 최대한 피해주민입장에서 충분한 보상과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난안전관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차원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본부, 치수방재과, 안전정책과 등에서 각기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부분은 각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유사시 재난관리를 총 지휘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가집단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인력풀 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에 조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그리고 방재 장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각종 화학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화학보호복만 보더라도 경북도의 경우 최소 355벌 정도가 필요하나 실제 108벌로 247벌이나 부족한 실정으로 보유율 30.4% 수준이며, 그마저 구미에는 5벌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고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및 관계공무원들 역시 열악한 장비 등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비와 더불어 관련

전문인력 및 장비지원이 선행되어야 갖추어진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관계기관의 허술한 시스템과 미흡한 초동대응은 올곧이 정부와 관계기관만을 믿고 의지하는 주민과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도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시설과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에도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구축과 더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마련 및 전담부서 신설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돌아선 피해지역 주민의 애타는 아픔과 고통에 귀기울이고 아픈 상처를 세심하게 보듬고 치유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 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년 10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성주) ◎

<<수해지역 피해지원 관련>>

농수산위원회 소속
성주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중순 태풍 ‘덴빈’,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산바’로 인해 우리 도 전체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 주택·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 과수낙과, 시설하우스 파손 등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민심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구미 불산누출사고란 인재(人災)로 우리 도민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구미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더불어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도 여전히 생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과 피해복구 지원기준이 달라 더 큰 피해를 입고도 더 적은 보상을 받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너무나도 처참한 피해현장에서 공무원, 군인,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분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 상처 난 수재민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복구현장에서 저도 함께 일하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는 경북도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수재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 '산바'로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등의 피해액이 포항 108억원, 경주 166억원, 김천 430억원, 고령 113억원, 성주 323억원 등 총 1,140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극심한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등 5개 시군은 지난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재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내 두 번째로 큰 피해지역인 성주를 예로 들면, 9월 16일에서 17일 이틀간 평균 297mm, 시간당 최고 70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산사태로 1명이 사망하고, 도로가 끊기고, 하천둑이 무너져 주택, 상가 등 900여 동이 파손·침수되어 660세대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너무도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만도 320억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중 건물 침수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파손 16동, 주택침수 461동, 상가침수 426동 등 총905동으로 나타나는데, 주택과 상가 침수의 피해복구 지원기준이 너무나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침수피해임에도 피해복구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침수는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재해구호협회가 지급하는 수재의연금 100만원 등 약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택보다 피해액이 훨씬 큰 상가와 소상공인의 경우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되며,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과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 수해피해에 대한 특별 위로금 200만원 등이 있었으나, 2006년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삭제하면서 이마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수재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하루 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은 침수피해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침수피해를 당하고도 지원기준이 달라서 더 큰 피해를 입고도 더 작은 금액을 보상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는 도민 모두가 잘 사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되어야 한데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보다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합당한 피해 지원기준 마련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관련 규정, 지침 등의 제도적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고, 피해에 따른 경중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일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한 경북도의 피해복구비가 피해조사 결과보다 1,041억원이나 증액된 3,779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경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복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과 조속한 완전 복구로 우리 도민들의 고통이 하루 속히 덜어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 10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상주) ◎

<<땅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도와 충청북도 괴산군의 음모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도의 도계지역에 대한 관심제고와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상주시 화북면 입석1, 2리¹⁾, 문경시 가은읍 완장2리²⁾를 대상으로 시·도간 「경계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13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 했으며, 괴산군에서는

1) 177가구 395명

2) 21가구 48명

화북면 입석리 주민들의 참석을 수차례 유도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비민주적 불통 행정과 몰염치한 시도는 제동이 걸렸지만,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원인이 있어 경상북도의 체계적인 대비와 상처받은 지역민을 위로하고 경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충청북도 및 괴산군과 문장대·용화 온천지구³⁾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7년간 갈등과 소송을 벌였으며, 환경단체 등을 동원한 충청북도의 조직적인 방해로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패소⁴⁾했습니다.

충북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식수원 오염이지만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법주사와 충북을 찾는 관광객이 경북으로 유출되고, 괴산의 소규모 온천이나 수안보지역이 경제적으로 입을 타격”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천개발사업이 좌절되자 해당지역 주민⁵⁾들이 “우릴 소외시키는 경북과 상주를 버리고 충북으로 가자”고

3) 용화지구는 1985년 경북도가 258만 2천㎡를 온천지구로 지정 1991년 착공됐으며, 인접한 문장대지구는 1985년 경북도가 272만㎡를 온천지구로 지정 1996년 개발시작, 충북에서 1996년 온천개발 허가 취소 소송제기

4) 2003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개발면적 축소 및 오수처리공법 변경 조건으로 상주시 개발 재허가 2009년 대법원에서 패소

5) 상주시 화북면 운흥1, 2리, 중별1, 2리 4개 마을

집단행동⁶⁾을 하기도 했으며,

대법원에서 1차 패소 후 온천개발지구 주민들이 충북으로 편입을 요구한다는 여론을 충북에서 퍼트리며 온천지구를 탐낸 의혹도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진짜 속셈은 입석리는 물론, 온천개발지구를 편입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괴산군은 “도계마을 생활권 통합을 위한 농산물생산 유통과정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고 절임배추 및 대학찰옥수수 생산 현황을 파악”한다고 화북면과 가은읍에 공문을 보냈으며, 고추건조기 및 고추유통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화북면민들을 괴산지역 축제에 초청하고, 수년째 주민 간에 체육행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지역민에게 ‘괴산군 발전 유공자 표창’을 주는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합과 상생을 주장하면서 꿈수를 부리는 현 상황에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경북의 땅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6) 2007년 4월부터 수차례 발생, 관계기관에 행정구역 개편 건의문 발송 등

늘 우리는 “지방에도 사람이 삽니다. 우리도 국민이라고 주장합니다. 경북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그들도 도민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경상북도 도계지역정책과 타 시·도의 도계지역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도의 장·단기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지역구는 생명이며, 그 누구든 지역구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년 10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울진) ◎

<<원전주변지역 질병 역학 조사 관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울진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달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느 사건이 그러합니다만 이번 사태 역시 평소에 우리가 조금만 더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 제3의 구미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사고 발생 시보다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등에 대한 현황도나 위치도를 우리 경북도가 일선 시군과 연대해 제작하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 발언의 주제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각종 질병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질환, 그 중에서도 갑상선암 발병률입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한 연구소가 원전과 갑상선 암 발병률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반핵 의사회 측이 관계가 있다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주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입니다.

지난 199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2011년 2월까지 20년 동안 이뤄진 이 조사에서 원전 5km 이내 거주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30km 밖 거주 여성에 비해 2.5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5km 미만 근거리에 사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61.4명이며 이는 30km 이상 원거리 거주 여성의 26.6명에 비해 통계적으로 2.5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담당해 온 서울대 연구소 측은 이를 두고 "갑상선암 이외 다른 암들은 통계적 의미가 없었고 그런 만큼 원전과 갑상선암과는 인과적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핵 의사회 측은 “서울대 연구소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원전 가까이 살수록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다”면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원전사고가 아니어도 원전이 인근 주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일한 자료를 놓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 놓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믿어야 할까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도가 나서서 정밀 진상 조사에 나서길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원전 주변의 방사능과 관련된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우리 도 산하의 의료원에 맡기길 촉구합니다.

이럴 경우 원전에서 징수하는 지역개발세의 일부를 도 산하 의료원에 지원할 수 있어 악화일로에 있는 의료원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가 나선 만큼 주민들의 혼란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전 주변 지역에 상존하는 방사능과 그 관리입니다. 현재는 원전측이 지역의 모 대학에 용역을 주어 그 결과를 1년에 한 차례씩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해서 저는 이것 역시 우리 도가 직접 챙기길 촉구합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서서 경주시와 울진군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 연대,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이 사업을 한수원과 별도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봅니다.

경주시민과 울진군민, 더 나아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우리 경북도가 진정으로 원전에 대한 환경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길 고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6건(원안가결 5, 수정가결 1)
- 결의안 : 2건(원안가결)

■ 조 례 안

-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의회 조례 제 호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정립·확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법인의 설립·운영) ①법인의 명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기념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 3 조(사업) 기념관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독립운동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시
2.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3. 독립운동정신 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

4. 기념관 시설의 관리

5. 그 밖에 기념관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 조(재산의 조성) 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 5 조(운영비 등 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정관) ①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5.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기념관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임원) ①기념관은 이사장 및 관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임원의 직무 등 세부사항은 기념관 정관으로 정한다.

제 8 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①도지사는 기념관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기념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기념관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기념관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기념관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기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검사 등) ①도지사는 기념관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기념관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기념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출연금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등
- ※ 안동시 출연금 및 운영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은 경상북도와 안동시간 협의와 양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사항으로
-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후('12. 11월 예정) 비용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보훈선양 담당사무관 이복영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상북도 내

경로당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 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5. 노인동공작업장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②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경북도내 경로당은 2012년 6월말 기준 7,494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총 예산 287억 6천6백만원 중 국비 61억 3천만원 (21.3%), 도비 49억 7천5백만원(17.3%), 시군비 172억 8천6백만원(60.11%)이 지원되고 있음. 전체 예산중 도비의 부담은 시군비와 국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

〈표 1〉 2012년 경로당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산 출 기 준
		28,766	6,130	4,975	17,286	
경로당운영비	7,413	14,805		2,692	12,113	운영비: 72만원(개소/연) 난방비: 50만원(개소/연) 특별난방비: 70~85만원(개소/연)
경로당 활성화사업	12	120		36	84	12개소×0백만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운영	1	30		30		인건비 1명×0백만원
동절기난방비	7,413	11,120	5,560	1,668	3,892	7,413개소×0만원×6개월
양곡지원	7,413	2,280	570	513	1,197	월1포(읍지역 7, 동지역 6개월)
냉방비 (특별교부세)	7,494	375				개소당 50천원(1개월) (2012. 7. 31 기준 지원)
건강기구지원	40	36		36		발마사지기 40개×0만원

조례 제정에 따른 5년간 경로당 수는 2012년 7,494개소에서 2016년 7,647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예산 규모는 2012년 287억 2천3백만원에서 2016년 292억 6천 7백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기준 도비 부담 비율 17.3%를 적용할 경우 예산의 추가적인 부담은 미미한 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표 2> 참조).

〈표 2〉 경북도내 5년간 경로당 지원 예산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량 (건,명)	예산	사업량 (건,명)	예산	사업량 (건,명)	예산	사업량 (건,명)	예산	사업량 (건,명)	예산
합 계	22,553	28,723	22,694	28,903	22,828	29,003	22,909	29,132	23,001	29,267
경로당운영비	7,500	14,979	7,547	15,073	7,591	15,073	7,617	15,125	7,647	15,185
경로당 활성화사업	12	120	12	120	14	140	17	170	19	190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운영	1	30	1	30	1	30	1	30	1	30
동절기난방비	7,500	11,251	7,547	11,322	7,591	11,388	7,617	11,427	7,647	11,472
양극지원	7,500	2,307	7,547	2,322	7,591	2,336	7,617	2,344	7,647	2,354
건강기구지원	40	36	40	36	40	36	40	36	40	36

* 매년 약 3~5% 정도의 예산 증가를 반영하여 추계함.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수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우수농식품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식품”이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농식품인증, 도지사품질인증 등을 통해 생산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정책”이란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 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수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말한다.

제 3 조(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로컬푸드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수농식품 소비촉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농수산국장,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그 밖에 로컬푸드 및 식품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협의회 회의 등) ①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조(간사) 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 7 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제7조에 따라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추계

2. 비용추계의 전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위원 20명에 대한 연간 협의회 회의 참석 시 수당 등 실비에 대한 변상 및 일반운영비
- 연간 협의회 회의 3회 정도 개최(「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해당	없음			
	소계(a)						
세출	협의회 운영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 총 비용(a-b)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 연간 3회 협의회 회의 개최 및 회의 시 필요한 일반운영비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 비							
도 비	일반회계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특별회계						
	기 금						
시군비							0
민 간							0
기 타							
합 계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5. 부대의견

-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 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및 일반운영비 외에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작성자 : 식품유통과 지방농업 7급 제갈승(950-295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소 요 액				산 출 근 거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합 계	14,000	14,000	0	0	
협의회 운영	14,000	14,000			* 실비변상 20명×150천원×3회=9,000천원 * 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5,000천원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용도지구의 신설) 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신설〉	제8조(용도지구의 신설) ----- ----- ----- -----. 1.(현행과 같음) <u>제8조의 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u>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제41조, 제45조, 제55조, 제60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에 한정

제 5 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교육감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구매이행계획)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한다.
- 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 8 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 9 조(구매예외) ①법 제6조제5호에 따라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각 호 또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
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

4.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증대)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12년 10월 10일

제 출 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이유

법령과 어긋나는 조례안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함.

2. 주요골자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증대)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증대)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제 1 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 2 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제 3 조(적용범위) (제정안과 같음) 제 4 조(적용대상)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55조, 제60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에 한정 4.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는 제3호의 각급 학교 제 5 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구매이행계획)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 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삭제 제 5 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정안과 같음) 제 6 조(구매이행계획)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 7 조(구매실적)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 7 조(구매실적)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 8 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녹색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 8 조(구매의무) (제정안과 같음)
제 9 조(구매 예외) ①법 제6조제5호에 따라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각 호 또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9 조(구매예외)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리기자재 4.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 〈신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제정안과 같음)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증대)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신설〉 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제정안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에서 규정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따른 비용추계는 설계 시 마다 해당
제품군 유무를 파악하고 비용을 추계해야 하므로 시행
이전에는 비용추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학비부담이 어려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학습 활동에 모범을 보인 학생
2.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
되는 학생

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제 3 조(특별장학생의 정수) ①특별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교 학생 수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학교별 신규 선정 인원은 매 학년도 해당 학교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신입생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입생수의 10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학생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2. 신입생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정한다.
3. 신입생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1명을 배정할 수 있다.

제 4 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제9조의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제 5 조(장학금 지급) ①특별장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②특별장학생에게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비를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지급기간 등) ①특별장학생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제5조제2항의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 7 조(지급중지) ①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퇴학하거나 1년 이상 휴학한 경우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소요재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매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 9 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고등학교의 특별장학생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담당관과 교육정책국의 각 과장,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 이내로 한다. 단, 외부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학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교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학교장은 제3조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특별장학생 인원수를 초과하도록 복수 추천을 하고, 학교심사위원회는 배정된 인원내에 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 심의 후 학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2항 외부위원의 자격 및 학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서 제8항까지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조(장학생 명부 작성·비치) 학교장은 대상학생의 이중 수혜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별장학생 및 각종 외부장학생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 지도·감독) 교육감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중학교 특별장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학교 특별장학생은 제6조에 따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 결 의 안

-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1명씩으로 구성한다.
- 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라.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 전문위원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가.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간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지역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 나.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추진, 공동협력 사업발굴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 모색과 공동방안강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과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함.
- 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실천 방안

마련과 각종 프로젝트 추진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나.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 라.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 전문위원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가.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이 지났건만 권한 없는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에서 권한과 돈은 여전히 중앙으로 집중되어 지방정부는 조금이라도 국가지원을 더

받으려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매달리는 현실 속에 지방자치는 요원한 것이 되어버렸다.

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패러다임이 되었다. 국가와 국가 간,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지방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인 과제이다.

라. 이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뜻을 모아

-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특위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나. 경상북도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57회 임시회·제258회 임시회)



2012. 10 인쇄 / 2012. 10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602-5284

FAX : 602-5140



<비매품>